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96

발의연월일: 2021. 3. 22.

발 의 자:임오경・유정주・이수진

이병훈 · 장철민 · 박 정

김민철 · 서영교 · 오영환

김성주 · 이상헌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거 신라·백제 시대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 였던 경주·부여·공주·익산을 고도(古都)로 정의하고 역사문화환경 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지구의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고도보존육성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2조에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를 제8조제2항제1호와 동일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0호까지의 계획은 고도 보존육성사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조정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혼란 없는 사업수행과 고도별로 기본계획의 전략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1항).

또한 현재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조례로서 상위 법률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률 체계에 맞게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단서 삭제).

법률 제 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하려면"을 "수립하려면"으로,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를 "거쳐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승인하면"을 "수립하면" 으로,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 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하면"을 "수립하면"으로 한다. 제11조제8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을 "고도를 관할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2. (생략)
-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 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 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 화환경을 보존 · 육성하기 위 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하다.

4. (생략)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이 고 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군 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도 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기 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개 정 아

- 1. 2. (현행과 같음)

-----고도보존육성기 본계획에 따라-----

4. (현행과 같음)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고 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 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 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생략)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u>승인하려면</u>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 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 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 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 (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

② (현행과 같음)
③
<u>수립하려면</u>
<u>7</u>]
쳐야 한다.
4
<u> 수립하면</u>
<u>통보</u>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정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① ~ ⑦ (생 략)
- ⑧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단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⑨ (생략)
-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u>기본계획의</u>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 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 행한다.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8
<u><단서 삭제></u>
9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시행자)
고도를 관
<u>할하는</u>
_
•